



석면피해 구제제도

「석면피해구제법」

석면피해 구제제도란?

석면광산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

석면(石綿, Asbestos)

- 돌이지만 숨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로 그리스어로 '불멸의 물건'을 의미
- 화산활동에 의한 화성암의 일종으로 내화성, 내열성, 섬유성, 전기절연성이 뛰어나
- 단열재, 천장재, 슬레이트 등 각종 건축자재 및 브레이크라이닝, 방화제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나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제품 제조·사용 금지

대상질병

▶ 원발성 악성종피종

석면에 의한 암의 일종으로 신체 내부 장기를 덮는 보호막인 종피에서 악성세포들이 발생 (잠복기 약 20~35년)

▶ 원발성 폐암

석면노출에 의한 폐암일 경우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동반(잠복기 약 20~40년)

▶ 미만성 흉막비후

석면노출로 인해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여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질병 (잠복기 약 15~40년)

▶ 석면폐증

석면으로 인해 폐조직에 상처가 생겨 변형되며, 공기집이 생겨 벌집모양으로 나타남 (잠복기 약 15~40년)

석면피해 구제급여



구제급여 종류

요양급여	석면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급여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 지급
요양생활수당	석면질병의 치료·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지급
장의비	석면피해 인정 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
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	석면피해 인정 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
구제급여조정금	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

지급기준 (19년 현재)

대상질병	요양생활수당	(특별)장의비	특별유족조위금
원발성 악성중피종	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/1000	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/1000	장의비의 1,500/100
원발성 폐암			
미만성 흉막비후	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/1000		장의비의 750/100
석면폐증 1급			
석면폐증 2급	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/1000		장의비의 500/100
석면폐증 3급	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/1000	장의비의 250/100	

※ 구제급여 분담비율 = 기금(90%) : 지자체분담(10%)

신청 및 접수

석면피해 인정신청



신청대상자

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(석면피해 인정) 및 유족(특별유족 인정)

※ 산업재해보상보험법, 공무원재해보상법, 군인연금법, 선원법,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,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

신청서류

▶ 공통서류

- 석면피해 인정신청 - 석면피해인정 신청서
- 특별유족 인정신청 - 특별유족인정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자 기준)
-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
-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

구분	제출서류명
거주력	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(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) ※ 유족의 경우 사망자와 신청자 모두 필요
직업력	근무경력 증명서 등 근무경력 확인서류 (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등)

▶ 질병별 제출서류

구분	증빙서류명
원발성 악성종피종	-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
원발성 폐암	-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-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(CD파일) 또는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
미만성 흉막비후	-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(CD파일) - 폐기능 장애 검사서류(노력성 폐활량, 1초량, 폐확산능)
석면폐증	-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(CD파일) - 폐기능 장애 검사서류(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략 가능)

※ 신청서류는 홈페이지(www.adrc.or.kr)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접수처

- 석면피해 인정신청 -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·구청(환경업무 담당과)
- 특별유족 인정신청 -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·구청(환경업무 담당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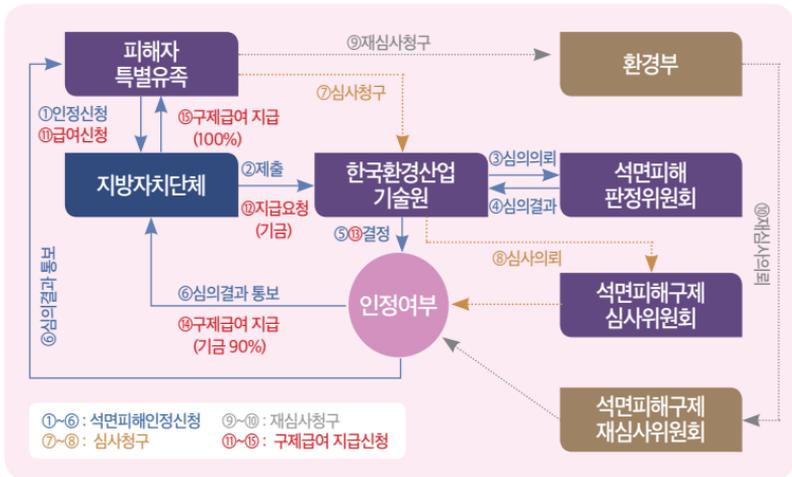
석면피해구제 진행절차



진행절차



제도운영 체계도



안내 및 문의

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팀



대표전화_ 1833-7690



홈페이지_ www.adrc.or.kr